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도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056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을 추진 중임
- 나. 이에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원활한 설립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5년도 소요예산을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구분	시설현황	
서울투자 진흥재단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6·7층	
	- 규모 : 면적 991.59㎡(6층 590.2㎡, 7층 401.39㎡)	
	- 시설소유 :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이민담당관	
	- 주요시설 : 경영전략팀, 투자유치팀 등 사무실	

나.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이하 생략)

다. 출연 필요성

- 투자유치 전문성과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에 기반한 투자유치 가능성 확대
- 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증대와 서울 경제성장에 기여

라. 주요사무

- 서울 핵심 개발지 마케팅을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 및 홍보
- ‘투자하기 좋은 서울’ 대·내외 홍보 및 설명회 개최
- 투자유치 유망기업 발굴·지원
- 서울 진출기업에 대한 단계별 인센티브 제공 등

3. 소요예산(세부내역 : 붙임)

- 2025년 출연금액 : 1,795백만원
 - 사업비 430백만원, 인건비 383백만원, 운영비 432백만원, 기본재산 500백만원, 예비비 50백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인베스트서울 운영 예산 중 일부 변경 및
현물 출연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 사업별 예산(안) 1부.

※ 작성자 : 경제실 금융투자과 반가운 (☎ 2133-4824)
경제실 금융투자과 이선미 (☎ 2133-4769)

붙임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2025년 사업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예산(안)
합 계		1,795,992
고유사업비 소계		430,150
1. 서울 투자환경 글로벌 브랜딩 및 홍보		125,950
	서울 개발부지 마케팅을 위한 부동산 투자전문 박람회 참가 및 홍보	90,450
	서울 투자환경 설명회	15,500
	서울 투자환경 글로벌 홍보	20,000
2. 글로벌 자본 유치		69,200
	투자유치 유망 CORE 어워드 행사	29,200
	성과우수기업 지원금	40,000
3. 해외 기업 유치		235,000
	해외기업 진출단계별 인센티브(올인원패키지) 제공	235,000
일반관리비 소계		815,842
	인건비	383,701
	기관운영경비	432,141
기본재산 소계		500,000
	기본재산 출연(현금)	500,000
예비비 소계		50,000
	일반예비비	50,000